

웰컴저축은행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웰컴저축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(공) 제123호 (2026.07.14 ~ 2027.07.13)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1.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WELCOME 퇴직연금 정기예금
- 특 징 :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

2. 주요내용

예금과목	• 정기예금	
가입대상	•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	
계약기간	• 12개월	
가입금액	• 최저 ▷ 1원 이상 • 최대 ▷ DC형 및 IRP형 : 1억원까지 / DB형 : 제한없음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지급식(복리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	
예금자보호여부	DC/IRP [해당] 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1억원까지" 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 ※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
	DB [비해당] 	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제한사항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,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 불가	
적용금리 (세금납부 前)	• 기본금리는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됨 *신규(자동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)시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음	
만기이자 산출근거	• 이자계산방법 :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 지급(원미만 절사) 신규일 만기일 [이자계산산식] $\text{원금} \times \{ (1 + \text{금리} / 12)^n - 1 \}$(n은 경과월수)	
만기처리방법	DC/IRP	•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, 동 원금과 이자는 •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•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 •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•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
	DB	•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
만기후금리	•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금리를 적용	

중도해지금리 및 계산방법	• 신규/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와 동일 •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금리 적용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중도해지금리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약정기간의 80% 이상</td><td>약정금리의 90%</td><td rowspan="6">전구간 0.1% 보장</td></tr><tr><td>약정기간의 60% 이상</td><td>약정금리의 70%</td></tr><tr><td>약정기간의 40% 이상</td><td>약정금리의 50%</td></tr><tr><td>약정기간의 20% 이상</td><td>약정금리의 30%</td></tr><tr><td>약정기간의 20% 미만</td><td>약정금리의 10%</td></tr><tr><td>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</td><td>0.1%</td></tr></table>	예치기간	중도해지금리	비고	약정기간의 80% 이상	약정금리의 90%	전구간 0.1% 보장	약정기간의 60% 이상	약정금리의 70%	약정기간의 40% 이상	약정금리의 50%	약정기간의 20% 이상	약정금리의 30%	약정기간의 20% 미만	약정금리의 10%	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	0.1%
	예치기간	중도해지금리	비고														
	약정기간의 80% 이상	약정금리의 90%	전구간 0.1% 보장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60% 이상	약정금리의 70%		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40% 이상	약정금리의 50%		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20% 이상	약정금리의 30%		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20% 미만	약정금리의 10%																
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	0.1%																
• 중도해지금리 계산방법 아래 그림은 중도해지금리를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 적용되는 중도해지금리는 실제 가입기간 및 예치기간에 따라 적용																	
(금리) (예치기간)																	
특별중도해지 금리	•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시에는 가입 당시(재예치된 경우 최종 재예치 당시) 1년제 약정금리 제공																
특별중도해지 사유	①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,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④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수탁자의 사임 ⑥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⑦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⑧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⑨ 수수료의 징수 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조4 및 제 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																
분할해지 (일부지급)	•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• 단,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①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③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조4 및 제 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																
계약의 해지	•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금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																
자동재예치	•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 예금의 만기시 해당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재예치 • 자동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																
위법계약해지권	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시 고객은 일정 기간 이내에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고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															

자료열람 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연계·제휴 서비스	해당없음

3. 유의사항

-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,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이 예금은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-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.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당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,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4.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등
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**판매 금융회사, 웰컴저축은행 고객센터(1661-94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welcombank.co.kr)**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**금융감독원 (국번없이 1332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"웰컴저축은행은 소비자 가치 실현을 위해 소비자중심경영(CCM)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"

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이란?

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


※ 금융용어 설명

용어	내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(예시) 입금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